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8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이병진·조 국·임호선

윤준병 · 송옥주 · 임미애

한정애 · 한민수 · 서삼석

이원택 · 윤후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주차 금지 규정을 두어,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니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와는 달리 분말소화기나 물로는 진압하기가 어려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차 금지 규정처럼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충전구역에서의 화재를 예

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 10항 신설 및 제16조제1항).

법률 제 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①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
- 2. 제11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 ⑨	전용주차구역 등) ① ~ ⑨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⑩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		
	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u>⑩</u> ・ <u>⑪</u> (생 략)	<u>①</u> ・ <u>②</u> (현행 제10항 및 제11		
	항과 같음)		
<u>⑩</u> <u>제11항</u> 에 따른 환경친화적	③ 제12항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			
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u></u>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u>		
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한다.		
	1.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		
	2. 제11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